

- 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)
- 5)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다
 - 6) 전직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수료를 한다
 - 7) 기타 ‘수급자’ 또는 ‘보호자’의 요청에 협조한다.

제 21 조(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)

- 1)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
 - ①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 -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 - ③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합리적인 주장
 - ④ 수급자가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권리
 - 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서비스 변경을 요청 할 권리
 - ⑥ 수급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,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,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.
- 2)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이용자(입소자)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 - ② 이용자(입소자)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
 -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 - ④ 장기출장 등으로 ‘수급자’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 -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 - ⑥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

제 22 조(계약의 해제)

- 1) 수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
 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② 노인장기요양법 제 23 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③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‘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동의 없이 ‘기관’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 - ④ 기타 ‘수급자’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 한 경우
- 2) ‘기관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수급자’ 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 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‘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’에 따른 간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
 - ③ ‘수급자’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